동화기업 행동규범

(Code of Conduct)

Dongwha
동화기업

Revision and Signoff Sheet

Change Record

Version	Date	Change reference
1.0	2025-06-09	동화기업 행동규범 제정

동화기업 주식회사(이하 '동화기업')는 기업의 사회적, 윤리적 책임을 다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 규범 및 기준,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'동화기업 행동규범'(이하 '본 행동규범')을 제정했으며, 본 행동규범을 모든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.

동화기업은 사업장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,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 및 유지하면서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. 본 행동규범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각각 동등하게 중요하며, 본 행동규범과 현지법규상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높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.

인권 및 노동

동화기업은 세계인권선언,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, 국제노동기구(ILO) 기본협약 등의 인권·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지지하며,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준수합니다.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공정하게 대우합니다. 이는 임시 근로자, 이주 근로자, 실습생, 단기 계약 근로자,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 적용됩니다.

1. 자발적 취업

- 모든 근무와 직업은 자발적이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불이익 없이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강제 노동, 착취 노동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됩니다. 노동을 강제할 목적으로 폭행, 협박,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상황, 채무 관계 등에 기인해 정신적 압박을 가할 수 없습니다.
-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한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.
- 근로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,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 등의 양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.

2. 아동노동 금지

- 국제노동기구(ILO)의 제 138 호 최저연령협약 및 자국의 최저고용연령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즉 15 세(국제노동기구(ILO) 제 138 호 최저연령협약의 예외 대상인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4 세) 미만이거나 자국 법령상 규정된 최저고용연령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18 세 미만의 근로자는 야간 근무, 초과 근무를 비롯해 안전과 보건 면에서 위험한 일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, 근로시간과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작업장 견습생 제도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3. 차별 및 괴롭힘 금지

- 채용과 승진, 보상, 교육(연수) 기회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, 피부색, 연령, 성별, 성 정체성 및 표현, 성적 지향, 민족 또는 출신 국가, 장애 유무, 혼인 및 임신 여부, 종교, 정치적

소속, 노조 가입 여부 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.

-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4. 근로시간

- 비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,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
- 모든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.

5. 임금

-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,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임금이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해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6. 인도적 대우

- 모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.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, 성적 학대, 체벌,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, 폭언 등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,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.
-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과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,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.

7. 결사의 자유

- 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(노조창립 등)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며, 근로자가 차별이나 보복, 협박,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.

안전 및 보건

동화기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,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, 생산의 일관성,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. 또한 지속적인 근로자 교육이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.

1. 작업환경

- 적절한 설계,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,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, 안전한 작업 절차(잠금장치, 보호장치) 구축을 통해 안전 및 보건 위해 요소(화학물질,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, 화재, 차량 및 낙상 등)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,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며 착용을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.

-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고,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-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활동의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 등이 현지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2. 비상사태 대응

-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, 근로자 통지 및 대피 절차 마련,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.

3. 안전 진단

- 사업장의 안전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.
-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·기구·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 또한 안전장치, 방호벽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

4. 안전 관리체계 구축

- 사업장 내 책임자 직속의 안전 관리 전담 부서를 배치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해 자율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.
-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, 매뉴얼에는 즉각적 조치 사항, 대피 절차, 보고 체계, 후속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,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5. 안전 및 보건 커뮤니케이션

- 기계, 전기, 화학,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.
-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을 언제든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.

6. 보건 관리

- 근로자에게 휴게공간, 화장실, 식당 등을 제공하는 경우,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-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,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며 비상구, 온수, 냉난방 시설, 환기 시설, 조명, 출입통제장치가 마련된 합리적인 수준의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.

7.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

- 산업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, 관리, 추적,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보고 장려, 상해 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, 필요 의학적 치료

제공, 재해 또는 질병 발생 시 시정 조치 시행, 사례 조사, 업무 복귀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환경

동화기업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. 제조공정에 있어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, 환경경영 체계를 운영하며 환경 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1. 환경관련 허가 및 보고

- 동화기업은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, 유지, 관리하며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운영해야 합니다.
-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2.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

- 사업장의 전력 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(GHG) 배출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
-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에너지 효율 향상,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.

3. 제품 환경영향 관리

- 제품의 제조, 유통 등 전과정에 걸친 제품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평가(LCA)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합니다.
-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하며,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물질의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관련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.

4. 원부자재 관리

- 제품 생산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원부자재 투입을 최적화합니다.
-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연자본을 훼손시키거나,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생산된 원부자재가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.

5. 유해물질 관리

-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고, 해당 물질의 안전한 취급, 이동, 저장, 사용, 재활용 또는 재사용과 확실한 폐기를 보증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- 사업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관리하고,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6. 폐기물 및 자원 절감

-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위해 폐기물의 감소, 재사용, 재활용 등을 고려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- 폐기물의 유해성 등을 파악하고 특성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,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.

7. 대기오염 관리

- 동화기업은 설비 가동, 산업공정 및 위생 시설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, 연무제, 부식제, 미립분말, 오존층 파괴물질 및 공정에서 생긴 연소부산물을 배출하거나 폐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어 및 처리해야 합니다.
- 동화기업은 대기 물질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
8. 수자원 관리

- 수자원 사용 및 방출을 기록하고 이를 모니터링해, 수자원 보존 방법을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.
-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,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, 감시, 통제하며 폐수 처리 시스템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.
- 폐수의 수질 관리 및 물 사용 저감 활동을 수행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9.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파괴 방지

- 동화기업의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가능한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저해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며,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, 토지, 산림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10. 지역사회

-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, 지역사회가 제기하는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지역사회와 공생하면서 함께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.
-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
윤리

동화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1. 비즈니스 청렴성

-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부패, 강요, 공갈,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.

2. 부당 이익 금지

-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, 제안, 허가,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.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 3 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, 제안, 허가,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

3. 공정 거래 준수

-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불공정한 거래관행, 부정경쟁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4. 정보 공개

-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이를 회계장부 및 사내 시스템에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. 회사는 노동, 보건, 안전, 환경관리 실태, 사업 활동, 구조,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.
- 기록의 위조 혹은 조건이나 관행에 따른 허위 진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.

5. 신원보호와 보복금지

- 동화기업에 공급되는 관련 자재 공급망 내에서 위험 또는 실제 악영향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밀 및 익명의 신고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임직원 및 협력사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부의 비윤리적 불법 행위 또는 이슈 사항을 자유롭게 제보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해야 합니다.
- 위법 행위를 보고하거나 후속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.

6. 수출 통제 및 경제적 제재 준수

-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 및 국제 무역 금수 및 제재를 준수해야 하며, 제재 위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7. 신뢰 문화 구축

- 협력사,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혹은 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동화기업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지속가능한 구매

동화기업은 지속가능한 구매를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.

1.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

- 동화기업은 인권 유린, 전쟁 범죄 또는 국제 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,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, 수자원 고갈,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- 동화기업이 공급 받거나 사용하는 원자재, 제품에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(Collectively 3TG) 그리고 코발트 등 분쟁광물이 포함되는 경우(현재는 해당 분쟁광물을 포함하지 않음),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 등 분쟁지역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원 또는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

2. OECD Guidance 에 따른 실사 수행

- 동화기업은 동화기업이 공급 받거나 사용하는 원자재, 제품 내에 3TG 및 코발트가 포함되는 경우(현재는 해당 분쟁광물을 포함하지 않음),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해 OECD Guidance 에 따른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.

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

동화기업은 거래에서 취득한 각종 기술자료, 정보 및 지적재산을 이해관계자의 사전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누설,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
1.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

- 동화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기술자료, 정보 및 지적재산을 이해관계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.

2. 지적재산 보호

-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, 소프트웨어, 디자인,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.

품질경영

동화기업은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
1. 품질관리

- 동화기업은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, 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.

2.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

- 동화기업은 설비, 재료, 작업 방법의 변경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 시 고객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불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3. 협력사 대상 품질관리

- 동화기업은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품질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확보에 이바지해야 합니다.